1퍼센트와 100퍼센트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흔히 내세우는 논리는 그 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국민 중 1퍼센트에도 미치지 않으며 다수의 '선량한' 시민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애국법안(U.S Patriot Act) 폐지 요구가 거세어지자 부시쪽이 "이 법은 소수의 위험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수의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유사한 논리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논리는 다수의 '무지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의심스러운 국민을 국가기관이 마음대로 사찰하거나 적으로 몰아 부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이나 애국법안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한 두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러한 법의 존재 자체가 문제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와 다른 견해를 표현하거나 국가의 표준을 반대하는 행동 자체만으로도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가르치는 처벌의 기제이자 정치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극소수에게가 아니라 그러한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마치 교사가 삐딱한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혼을 내주면 벌을 받지 않은 모든 학생들도 위축되어 다음부터는 교사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즉 국가보안법의 기본 정신은 '안보'의 이름으로 국가를 물신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적과 우리'라는 단세포적인 이분법을 사회 전반에 조장하며, 사회 전반에 불신을 조장하고, 정치적 반대자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비판의 용기를 말살시킴으로써 인간을 질서의 노예로 만든다. 오늘 한국사회의 무지와 단세포성은 상당부분 파시즘과 냉전의 법제화인 국가보안법의 존재에서 유래한 것으로 봐도 틀린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에서 냉전이라는 것은 곧 구식민지 질서의 연장이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 이후 치안유지법에 이어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을 단순히 국가의 정신적 노예가 아니라 지배자의 노예로 만들어온 법이다. 그래서 그 효용성은 사실상 언제나 외부의 적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기득권 방어에 있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안보가 위협을 받는가? 오히려 그 반대다. 이제 국민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성과 자유의지로 정치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가? 오히려 그 반대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한국은 이제 근대이후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위장한 자유민주주의 세력, 즉 파시즘 세력에 대해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주체사상이 활개를 칠 것인가? 오히려 그 반대다. 이제 남북화해 국면에서 남쪽이 더 확실한 도덕적 우위에 서서 남북교류와 남북 화해 작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북한의 군부 강경세력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국가보안법이 존속되면 한국에 냉전질서가 지속되어 우리 민족은 언제나 서로 간에 싸우면서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중국과 미국 어느 한쪽의 외세에 기댈 수밖에 없을 뿐더러 21세기 새 문명에 동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국민 모두를 왜소한 인간으로 만드는 냉전 바이러스다. 따라서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의 상상력은 해방될 것이고, 한국인은 성찰하는 인간, 스스로 판단하는 인간, 입장과 관점이 있는 인간, 다소의 위험이 있더라도 불이익을 각오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 왜 상당수의 양심적인 우익들이 법 제정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부일협력세력이 그토록 국가보안법 제정에 집착했는지 생각해 보라. /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출처 : 한겨레신문 시평 2004. 9. 17>